

신분보장관리세칙

2007년 1월 29일 제정 2009년 8월 21일 개정 2011년 12월 23일 개정 2016년 1월 29일 개정
 2019년 3월 20일 개정 2022년 3월 30일 개정

| 현행안 | 개정안 |
|---|--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총 칙</p> <p>제1조 (명칭)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 (이하 '지회') 신분보장 관리세칙이라 칭한다.</p> <p>제2조 (목적) 본 세칙은 규칙 제50조(신분보장)에 의거 조합의 목적달성과 일상적 활동으로 인하여 희생조합원이 발생될 경우에 생계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.</p> <p>제3조 (지급대상) 1. 본 지회 규칙 제50조(신분보장)에 의한 신분(사망, 구속, 해고, 수배, 구금, 부상, 벌금, 민·형사 소송, 임금 등)상 불이익을 당한 자. 2. 지회장이 판단하되 대의원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자.</p> <p>제4조 (심의기구) 지급 대상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(대의원 회의)의결로 한다.</p> <p>제5조 (지급시기 및 기간) 1. 본 세칙 제3조(지급대상)의 발생 일로부터 계산하여 매월 급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기간은 사유가 소멸 된 날까지로 한다. 단, 지침에 따른 임금손실분의 지급기간은 별도로 정한다. 2. 당사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지급한다.</p> <p>제6조 (기금의 설치와 운용) 1. 신분보장에 필요한 제 경비는 쟁의기금과 특별부과금으로 한다.</p> | |

| 현행안 | 개정안 |
|--|-----|
| <p>가) 쟁의기금 : 치료비, 소송비, 벌금, 영치금 나) 특별부과금 : 사망, 부상으로 인한 휴직(초기진단, 6주 이상) 구속, 수배, 해고자의 생계비, 조합 및 지부, 지회 지침에 따른 임금 손실</p> <p>제7조 (지급기준 및 방법)</p> <p>1. 사망 장례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30,000 원씩 거출하여 지급한다.</p> <p>2. 부상 가) 치료비(본인 부담금) 전액을 부담하여 지급한다. 나) 6주 이상의 초기진단을 요하는 부상으로 휴직 시에는 부상 1명당 조합원 1인1,000원씩 거출하여 월별 기준으로 지급한다.</p> <p>3. 구속, 수배, 해고자 가) 소송비용 일체를 지급한다. 나) 사유 발생시 무급전임자 임금 지급 세칙에 준하여 지급한다. 다) 법적 대응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지급한다. 단, 해고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4. 벌금 전액 보상</p> <p>5. 구속,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은 1주 2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6. 지침에 따른 임금손실은 매월 조합원 대상 1인당2,000원씩을 거출하여, 사유 발생시 지급한다.</p> <p>제8조 (지급대상 제외)</p> <p>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(대의원회의)의 의결로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급사유가 소멸된 자 2. 타사에 취업한 자 3. 노조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4. 복직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자 5. 기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(보상금, 기부금) 등을 받고 있는 자. <p>단, 지급 받는 임금이 본 세칙의 지급금 미만 일때는 이를 상계처리 지급</p> | |

| 현행안 | 개정안 |
|--|-----|
| <p>제9조 (환불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회에서 생계비를 계속 지급 받고 본 세칙 제3조 (지급대상)의 사항이 종료되어 조합 및 회사에서 급료를 지급할 경우 그 금액과 이 세칙에 의해 지급한 기금 중 적은 것을 환급 조치한다. 단, 제7조 (지급기준 및 방법) 1항은 제외한다. 2. 지급사유가 허위 판정 시 지급금 일체를 1개월 이내 환불 조치한다. 3. 환불된 금액은 쟁의 기금으로 적립한다. <p>제10조 (재심신청 및 기간)</p> <p>본 세칙 제4조(심의기구)에 의해 부결이 되었을 때 본인 또는 조합의 이의 신청 시 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재심은 1회에 한한다.</p> <p>제11조 (법적관계)</p> <p>본 지회의 신분보장 관리기금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부 칙</p> <p>제12조 (시행)</p> <p>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13조 (제정과 개정)</p> <p>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총회(대의원 회의)에서 결의한다.</p> <p>제14조 (통상관례)</p> <p>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</p> | |